

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기획경제위원회 이원형 의원

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,
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
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기획경제위원회 이원형 의원입니다.

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「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,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본 개정 조례안은 「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가 제정된 후 2022년 4월 1차례 개정되었으나 개정과정에서 인용 조문번호와 용어가 일부 오기되어 조례 해석에 혼란이 있을 수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주요 내용은

조례 제2조 제2호 나목 중 “제8조” 를 “제9조” 로 하고,
같은 조 제3호 나목 중 “제8조” 를 “제9조” 로,
제7조 제1항 중 “제5조” 를 “제6조” 로 하고,
제14조 제1항 제1호 중 “다른” 을 “따른” 으로 함입니다.

아무쪼록 본 개정 조례안의 취지를 잘 살피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·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!